

202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

의안 번호	52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1. 21.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202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(안)을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고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2 주요골자

가. 2026년도 평창군 기금조성 규모는 총 9개 기금 29,81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01백만원이 감소하였음.

나. 기금별 규모는 다음과 같음.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	2025년도말 조성액 [㉠]	2026년 운용계획		2026년도말 조성액 $d=(a)+(b)-(c)$	증감 $e=(d)-(a)$
		수입 [㉡]	지출 [㉢]		
합계(9개 기금)	30,319,699	4,250,420	4,751,232	29,818,887	△500,812
통합재정안정화기금 (통합계정)	81,164	1,836	0	83,000	1,836
통합재정안정화기금 (재정안정화계정)	13,876,111	314,638	0	14,190,749	314,638
자활기금	530,831	14,142	29,000	515,973	△14,858
고향사랑기금	1,148,407	302,000	1,105,000	345,407	△803,000
체육진흥기금	1,797,896	544,530	35,000	2,307,426	509,530
육외광고발전기금	250,038	24,994	0	275,032	24,994
재난관리기금	1,738,600	527,736	900,000	1,366,336	△372,264
식품진흥기금	110,056	24,581	25,746	108,891	△1,165
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	10,786,596	2,495,963	2,656,486	10,626,073	△160,523

※ 수입 :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상환은 제외 / 지출 :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

※ 융자금은 지출 ㉢에 포함하여 계상함.

3. 관계법령

가.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 제159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